

朝鮮時代 婚姻奢侈의 禁制에 관한 考察

金 京 姬

성신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강사

A Study on the Taboo of Marriage Luxury of Chosun Period

Kyung-Hee Kim

Instructor, Department of Clothing and Textiles, Sungsin Women's University

目 次

Abstract	1. 婚姻奢侈 禁制의 實際
I. 序論	2. 織物의 禁制
II. 歷史的 背景	3. 服飾 및 裝身具의 禁制
1. 社會的 背景	IV. 禁制의 罰則
2. 服飾史의 背景	V. 結 論
III. 婚姻奢侈의 禁制	參考文獻

Abstract

As for the taboo of dress and its ornaments which was applied to only populace one-sidedly mainly under the power structure of feudalistic centralization of government like Chosun dynasty, the aspect of taboo was diversified all the more by having relation with various phenomenon of social structure characteristic, and the taboo items to be given in accordance with the flow of time shows the diversity.

Especially, the structure of dress and its ornaments in Chosun period showed the side of social position relation and luxury control, and the taboo of dress and its ornaments which was derived from the current thought about China was given frequently.

To respect the frugal virtue and moderate the life has relation with the stream of the times in individuals or nations. And, that it is externalized is dress and its ornaments. As the luxury about dress and its ornaments was serious in accordance with times, it appeared by having relation with whole economic question of nations. Then, this researcher thought this by relating this to the culture of customs. This researcher thought that the luxury about clothing gets to go to extremes and the law and order collapses, according as public morals get to be very lax. And, it can be said that the way to be able to control this is that the customs should be thoroughly obeyed and that the system to be able to play the role of braking is taboo. So, this researcher thinks that it is significant to examine the achievement which has contributed

toward the life of dress and its ornaments by successive kings on the basis of a true record of the Yidynasty and other all sorts of literatures about the real situation of prohibition order which has been from the first king to Kjong at the last period of nation.

The criticism and taboo about luxury which have been discussed at Chosun period may be subdivided into some kinds in accordance with the subjects.

But, in this tests, as it is the real situation that the case to be due to the lavish necessary articles for marriage which is coming to fore as our social problem nowadays is increasing remarkably, this researcher tries to examine the taboo about the marriage luxury at Chosun period in the order of successive generations.

Thus, before examining the taboo of marriage luxury, this researcher tries to examine about the taboo of textile luxury and study the taboo of marriage luxury, as the marriage luxury governs almost everything of textile luxury and it is regarded as the origin of marriage luxury, especially. And, this researcher tries to study as to how was the penal regulations based on it at the same time.

I. 序 論

儒敎가 社會를 支配했던 朝鮮王朝時代의 服飾은 男女老少, 上下貴賤에 따라 形態, 織物, 紋樣, 服色에 이르기까지 입는 사람의 身分에 따라 달리 나타났으며 多樣하고 華麗한 裝飾은 입는 사람의 존엄성을 과시하였다.

우리 나라 服飾은 中國의 文化를 導入하면서 服飾全般에 걸쳐 多樣化하기 始作하였다. 더욱이 階級的인 社會制度에 있어서 服飾制度는 男女, 上下貴賤을 區別하기 위하여 服飾生活의 複雜性을 면할 수 없었다. 그러한 가운데 人間의 本能은 無限한 慾望을 충족하기 위하여 奢侈는 날로 더하여 가고 百姓들의 日常生活속에는 虛僞虛飾이 많아지게 되었다.

이에 上流層에서는 자기들의 身分地位를 確保하고 社會질서를 奢侈에서부터 儉約으로 이끌기 위하여 禁止라는 制度를 만들기에 이르렀다.

朝鮮王朝와 같은 封建的인 中央集權의 權力構造下에서 주로 庶民階層에게만 일방적으로 적용되었던 服飾禁制는 諸 社會制度의인 여러 現象들과 관련을 맺고 禁制의 樣相이 더욱 多樣化되며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내려지는 禁制品目도 多變化를 보인다. 역설하면 禁制의 內容이나 빈도수의 과다는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며 服飾의 발전과 변화 양상의 이면에 깔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특히 朝鮮時代의 복식구조는 社會的인 身分關係 및 奢侈規制라는 측면과 中國에 대한 事大思想에 연유된 服飾禁制가 빈번하게 내려졌다.

朝鮮時代에는 儒敎的 倫理理念을 根幹으로 하여 社會가 형성, 발전되었으므로 識者層을 중심으로한 服飾의 重要性은 더욱 깊이 인식되어졌으며 이는 禁制의 多樣化를 낳게 하는 결과가 되었다.

검덕을 숭상하고 생활을 절제하는 것은 個人에 있어서나 國家에 있어서나 시대의 조류와도 관계된다. 그리고 그것이 표면화되는 것이 복식이다. 시대에 따라서는 복식에 대한 사치가 심하여 국가의 전체적인 경제문제와도 관련되어 나타나는데 이를 治者들은 풍속의 敎化와 관련하여 생각하였다. 풍속이 피폐해질수록 의복에 대한 奢侈는 極을 달하게 되며 기강이 무너진다고 생각하였으며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길은 우선 풍속이 바로 서야 하고 그 다음에 제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가 禁制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太祖부터 國末 高宗까지의 있었던 禁止令의 真相을 朝鮮 王朝實錄과 그 外 各種 文獻을 토대로 하여 歷代의 正別로 服飾生活에 기여한 業績을 알아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朝鮮時代 논의되었던 奢侈에 대한 논란과 금제는 그 대상에 따라 몇 가지로 세분할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은 요즘 우리의 社會분계로 대두되고 있는 호화혼수로 인한 사례가 현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하기에 조선시대의 婚姻奢侈에 대한 禁制를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혼인사치의 실재를 살펴보고, 혼인사치의 근원이라 생각되는 적률사치의 금제, 혼인사치에 관련된 복식과 그밖의 장신구에 대한 금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 거기에 따른 罰則은 과연 어떠했는지를 동시에 고찰하여 보려고 한다.

II. 歷史的背景

1. 社會的背景

朝鮮王朝를 이룩한 주도세력은 新興士大夫세력과 武將세력으로 이들 新進세력은 佛敎를 배척하고, 新興士大夫가 수용한 性理學을 社會의 指導理念으로 삼았다. 朝鮮의 政治制度는 中央集權의 兩班官僚制로서 高麗時代와는 달리 官僚가 될 수 있는 신분층은 士大夫 계층이었으며, 朝鮮時代는 社會의 身分秩序가 엄격해서 16世紀 初 에는 兩班, 中人, 常民, 賤人의 네가지계층으로 구분되었으며, 양반은 士大夫계층만을 뜻했다¹⁾.

朝鮮時代의 文化현상 중 뚜렷한 업적은 訓民正音의 創製였다. 訓民正音의 創製는 訓民正音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즉, 朝鮮王朝는 農業技術의 指導 普及와 儒敎倫理의 권장에 중점을 두어 百姓을 敎化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밖에 測雨器의 發明, 印刷術의 發達, [東醫寶鑑]의 著述등의 業績이 있었다.

朝鮮時代의 哲學的 指導理念은 性理學이었다. 특히 性理學은 16世紀 以後 儒敎的인 敎化政策의 理論의 根據를 이룬 학문으로서 宇宙의 根源, 事物의 法則, 人間의 本質 및 倫理問題를 體系化하여 크게 발달하였으며, 후기에는 實學思想이 일어나서 내재적인 自覺과 批判 및 서양의 科學的, 合理的인 思想이 결합되었다.

우리 實學思想의 特徵은 民族意識과 近代志向意識에 바탕을 둔다는데 있었다. 즉, 종래 중국 중심의 世界觀에서 벗어나 民族意識을 自覺하게 되고, 實學者들이 주장한 土地制度의 改革, 商工業의 振興, 對外貿易의 勸獎, 中世的階級性의 打破 등 근대로 지향하는 사상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 實學思想은 뒤에 開化思想으로 이어졌고, 日

帝강점기에서는 근대화를 전제로 한 民族運動으로 계승되었다.

朝鮮後期에 이르면 문학을 비롯한 각종 예술에 庶民的인면서 韓國의 特色이 나타났으며, 漢文學도 從來의 儒敎的 士大夫文學에서 庶民的 趣向으로 변화하였고, 書堂이 전국적으로 보급되어 敎育의 기회가 넓어지면서 兩班 아닌 學者文人이 排出되었다.

天主教의 전파와 이에 대립적인 東學이 일어나 平等思想을 基礎로 한 庶民文化발전에 이바지하였다²⁾.

1864~1910年 시기는 우리나라 歷史의 一代變革期로서 中國 중심의 世界秩序로부터 離脫하여 近代의 國際秩序속에 편입된 朝鮮은 西歐列強과 日本의 帝國主義의 침략에 대하여 국내적 矛盾을 해결하면서 近代 民族國家를 건설해야 했기에, 이 시기의 우리 역사는 傳統社會의 解體, 帝國主義 侵略과 이에 대응하는 開化와 相互作用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이러한 相互作用은 근대 民族國家건설로 昇華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이 시기의 우리 역사는 日本의 帝國主義의 侵略에 屈伏하여 殖民地로 전락하여 가는 과정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 變革期를 통해 우리민족은 근대적 民族國家建設의 理想을 추구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고, 日帝 殖民地下에서의 3.1운동과 상해임시정부의 豎立을 이루었다.

牽制와 均衡이 이루어졌던 朝鮮朝의 兩班政治體制는 純祖, 獻宗, 哲宗 등 어린 나이에 王位에 卽位한 王代에 와서 무너져갔다. 이 시기에 나이 어린 왕을 둘러싸고 外戚들이 政治의 失權을 장악하여 得勢하였기에 科擧制度는 紊亂해지고 官吏들은 腐敗하였고 농민들의 疲弊상이 極度에 달하여 농민의 亂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19世紀에는 西洋船舶이 해안에 자주 出沒하여 通商을 요구하였기에 朝鮮政府는 이에 效果的인 對應策을 수립하지도 못한 채 天主教에 대한 迫害만을 계속하였다³⁾.

1863年 高宗의 卽位로 흥선대원군이 실권을 장악하면서 조선의 사정은 달라졌다. 大院君은 對

1) 정신통화연구원, 「韓國民俗大百科」(서울: 정신통화연구원, 1991), p. 235.

2) 國史敎育研究會, 「新韓國史」(서울: 國史敎育研究會, 1988), p. 164.

3) 上揭書, p. 170.

內的으로 세도정치 弊端을 일소하고 강력한 中央集權制를 敍出하였고, 對外的으로 鎖國政策을 強行하였다. 그의 對外政策은 국민의 지지를 받았으나 그의 改革政治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高宗이 성인이 된후 閔妃一家가 得勢하였고, 이들은 대원군과는 달리 ‘開港’을 주장하였다. 이로 인해 社會的으로 큰 變革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 시기에는 變遷한 民亂을 통해 傳統的인 身分制가 解體되고, 새로운 社會秩序가 형성되고 있었으나 流動的인 상태에 불과했다.

壬辰倭亂後 中人層의 成長, 奴婢의 解放, 兩班 特權의 動搖現象등이 開港後 더욱 촉진되었고, 甲午更張을 통해 兩班, 中人, 常民, 賤民으로 구분되는 엄격한 世襲의 身分制가 공식적으로 解體 되었다. 甲申政變과 甲午更張에 서자나 中人出身이 많이 참여하는 등 中下階層의 社會進出이 두드러졌다.

이 시기에는 傳統的인 儒敎敎養을 갖춘 兩班知識人 보다는 改新儒學者, 自立的인 中產層 人事들이 社會의 指導層으로 부상하였는데, 이는 전통社會의 身分差別, 家族主義, 地域主義를 他派하고 學族的인, 平等主義的인 民族主義 수립을 지향 하였다.

2. 服飾史的 背景

우리나라는 中國에 隣接한 地理的인 條件으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學問이나 思想, 政治, 制度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가 中國의 影響을 받아 왔다. 服飾 또한 例外라 할 수 없으니 三國時代 이래로 우리 固有服飾과 中國服飾과의 二重構造 밑에서 발전하여 왔다. 新羅時代에는 唐制의 服飾을 사용하였고, 高麗時代에는 宋과 元의 影響을 받았으며, 朝鮮時代에는 明의 體制를 따르려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中國 服飾制度의 影響은 上流階層의 특징이었고, 一般庶民에게까지 미치지 않았다⁴⁾.

朝鮮時代의 衣料는 朝鮮朝의 성격에 의해 자연

히 침체되었으며 高麗時代의 계승에 불과하였다⁵⁾. 高麗時代에는 新羅의 뒤를 이어 衣料手工業이 中央, 地方을 막론하고 王公, 貴族의 호화로운 生活과 朝貢貿易品의 輸出, 中國 등의 外來 絹織物의 影響을 받아 그런대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朝鮮朝에 들어와서는 商工業의 억제라는 佛統的인 政策과 더불어 明, 淸으로부터 대량 수입되는 高級織物에 놀려 衣料手工業은 침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또한 朝鮮朝에 들어와서 織物 發達의 沮害要因이었던 服飾禁制令을 들 수 있는데 이를 大別하여 보면 金銀에 대한 禁制, 紗羅綾緞等 織物에 대한 禁制, 服色에 대한 禁制 등으로 되어 있고, 이에 대한 罰則도 엄하였다⁶⁾. 이러한 禁制令은 朝鮮朝 뿐만 아니라 이미 三國時代부터 계속 내려져 오면서 하나의 通弊가 되어버렸으며, 外國商品의 使用禁止와 奢侈를 억제하고 身分階級을 뚜렷이 하려는 思想的인 背景을 통해 많은 服飾禁制가 나타났다⁷⁾. 한편 강대한 中國을 뒤에 업고 있던 朝鮮朝에서는 事大의 禮를 다하기 위한 禁制도 있었는데 이는 服色에 있어 黃色禁令과 같은 것이었다.

이와 같이 朝鮮王朝의 織物은 開國 直後부터 強力한 崇儒抑佛 政策으로 말미암아 商工業이 賤視되었고 織物의 低級한 生産技術을 克服할 方策이 없었으므로 高級衣料는 전적으로 輸入에 의존하게 되었다⁸⁾.

朝鮮時代 前半에 걸쳐 부녀의 服飾奢侈가 심하여 禁制를 내리게 되었으나 例外的으로 英·正祖 시대에 있어서 妓女服에는 禁制가 허용되었다. 즉 妓女들은 奢侈가 허용되어서 首飾에 金·銀·鍍金을 사용할 수 있었고, 緋緞 옷을 입을 수 있었으며, 唐物禁制가 내려진 英祖때에도 妓女에게 는 허용되었으며, 英祖以後에도 궁중나인들은 毛緞의 가리마를 할 수 있게 허용되는 등 신분은 낮은 계급인데도 불구하고 奢侈가 허용되는 例外를 보였다.

4) 金東旭, 「韓國服飾史研究」(서울: 亞細亞文化社, 1973), p. 122.

5) 柳喜醇, 「韓國服飾文化史」(서울: 敎文社, 1982), p. 390.

6) 上揭書, pp. 370-374.

7) 林喜淑, 「朝鮮時代 織物에 나타난 紋樣 考察」, 弘益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5, p. 8.

8) 上揭書, p. 9.

16世紀末부터 17世紀前半기에 걸쳐 일어난 壬辰倭亂과 丙子胡亂의 兩大 國亂은 朝鮮王朝의 儒敎的 傳統社會를 크게 변동시키는 要因이 되었다. 이 가운데 16世紀부터 서서히 일기 시작하였던 朝鮮王朝의 兩班支配體制에 대한 反省은 壬辰倭亂, 丙子胡亂의 戰亂을 겪으면서 社會 現實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포부가 在野學者에 의하여 開陣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의식의 轉換은 對內的으로 社會의 變動과 對外的으로 사상의 자극에 의하여 새로운 學風, 즉 實學의 胎動을 가져왔다. 實學은 現實的으로 富國強兵과 民生安定을 추구하며 批判的이고 實證的인 연구를 통하여 民族 主體性의 認識과 近代 指向意識을 고취시켰고, 兩班社會의 矛盾을 극복하여 社會體制의 改편으로 현실을 打開한다는 데 뜻을 두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實學이 朝鮮時代의 사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이 시대의 實學者들이 中國을 따르던 慕華思想에서 벗어나게 된 점이다⁹⁾. 이와 때를 같이하여 服飾에 있어서도 오랜 세월 동안의 中國의 유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움직임이 보였으나 淸의 敗亡과 함께 高宗은 在位 34年 8월에 大韓帝國을 創建하여 年號도 光武라 改稱하고 皇帝位에 오르면서 冠服制度도 中國의 황제와 동일한 것을 着用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모처럼의 自主的 決斷도 國內外的 어지러운 政治的 狀況으로 발미안아 정책상의 명분이었을 뿐 제도화 되지는 못하였지만, 任辰, 丙子의 兩亂을 겪으면서 우리의 服飾 또한 우리 나름대로의 것을 형성해 가고 있었음을 간과할 수는 없다¹⁰⁾.

III. 婚姻奢侈의 禁制

1. 婚姻奢侈 禁制의 實際

조선왕조가 家禮를 숭상하여 喪祭禮를 중시해 여기에 대하여도 많은 禁制가 나와 있지만 禁制 중에서 가장 논의의 대상이 된 것은 혼인사치의 禁이다. 이 禁술에는 帶銀禁, 紗羅綾緞禁制, 油蜜果, 宴飾禁制, 佩物禁制 등 조선왕조시대 말까지

이에 대한 禁制는 그치지 않는다¹¹⁾.

혼인사치는 국혼 가례 吉禮를 통하여 그 사치가 놓아지고 사대부에서 이를 본받고 나라의 큰 폐가 된 것이다.

조선왕조 중엽에는 딸 셋을 여의면 기둥이 뽑혀진다는 속담이 유행할 정도였다. 조선왕조시대 말에 이르러 純宗嘉禮 때에는 이불 5百 여벌을 하는 등 사치가 極했는데, 앞서 英祖代에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國婚定例'까지 내려 鄉職使用을 권장했으나 실효를 보지 못하였다. 이는 거듭 거듭 내렸던 금령이 증명하는 바이다. 다음 혼인사치의 실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成宗 四年 七月에 보면 “... 근래 혼인하는 집을 보면 裝具는 반드시 사치하게 贈遺는 厚하게, 獻은 풍부하게 하려 합니다. 綾緞 珠翠는 본국에서는 나지 않는데 衾褥帳幕은 이것 아님이 없으니 불가합니다. 남자가 여자의 집에 갈 때는 積函이 앞서 가고 신부가 시부모를 뵈 때에는 膳羞 絲絡을 동시에 諍示하고, 서로 우세한 것을 경주하니 그렇지 못한 자는 동네에서 그것을 천히 여기고 친척들이 멸시하니 이에 부자는 그 재력을 탕진하고 빈자는 억지로 그에 달하려고 노력했으나 못한 자는 때를 놓쳐 혼인을 그만 두는 자 있으니, 이는 풍속의 잘못됨입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금법을 밝혀 弊風을 금하여 인심을 바로 하옵소서...”¹²⁾하였다.

또, 成宗 十三年 二月에 執義 姜甸孫이 아뢰기를 “우리 나라 혼례는 이미 분명한 법이 있으나 각기 그 품에 따라 법을 어김이 없도록 명했던 바 지금 듣건대, 中辭이 韓濶과 約婚하는 데 納綵 때 絲金을 쓰고 朱紅色의 函을 紗羅綾緞 15필, 銀一丁으로 채우고 그것을 큰 紅色匹段으로 썼다 하오나 辭이 그 禁制를 모르는 바 아닙니다. 단지 그 畝豪를 과시하려고 가비히 憲章을 犯했습니다. 청컨대 죄를 심문하여 벌을 주십시오.” 하니 正信 鄭光世가 말하기를,

“近日 妾子平이 약혼하는데 段子 一匹로 폐백

9) 民族文化研究所, 「韓國民俗大觀 I」(서울: 高大 民俗文化研究所 出版部, 1980), p. 205.

10) 金情喜, “朝鮮時代 女子服飾에 나타난 紋樣에 대한 研究,”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2, p. 8.

11) 李順洪, 「韓國傳統婚姻考」(서울: 학연문화사, 1992), p. 398.

12) 세종대왕기념사업회, 「成宗實錄」成宗 4年 7月(서울: 고려서적, 1980), pp. 46-64.

을 삼고 그 집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가벼히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하는데 풍속이 사치를 좋아함이 이와 같습니다. 申諤의 일은 역시 臣도 들었나이다.”하니 이때 왕이 좌우에 물어보니 李克培가 대답하기를,

“옛날의 納彩는 단지 보자기 안의 평상의 옷뿐이었는데 요즘 풍속이 사치를 숭상함이 이와 같은 즉 혼인함에 때를 잃음이 이때문입니다.”하니 왕이 말하기를 “이는 과연 弊風이다. 사헌부는 그 죄를 다스릴지이다.”라고 명하였다¹³⁾.

燕山君 때에 연산 자신은 “혼인하는 집에서 잔치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하니 薑謙이 말하기를 “우리 나라 풍속은 혼인날이 되면 술과 고기를 많이 준비하고 다투어가며 호사로움을 숭상하니 부유한 자는 관계 없지만 가난한 자도 이를 따라가려 하여 재산을 탕진하게 되고 이 때문에 혼인의 때를 놓치기도 합니다.” 하여 분에 넘치는 잔치를 금할 것을 주장하나 이에 왕은 “우리 나라에서 혼인하는 날 밤에 친족을 모아 잔치하고 술마시는 것은 그 유래가 오래다. 풍속이 그러한데 모두 엄격히 금지시키는 것은 가혹하지 않느냐.” 하여 유회책을 쓴 적도 있다.

그러나 혼인의 폐단이 사라지지 않자 司憲府에서 혼인의 사치를 범한 사람은 堂上官의 자녀를 논할 것 없이 일체를 금단시키며, 이를 어긴 사람은 그 가장에게 制書有違律로 論斷하도록 하고 혼인하는 집에서는 納彩하는 날자를 미리 官府에 알려 吏屬이 檢察하도록 하고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사람까지도 죄를 과하게 하자는¹⁴⁾ 강경책이 거론되기도 하였다.

中宗 五年 十二月 성균관생 李敬 등이 올린 상소문을 보면 “우리 나라의 제도와 문물은 中華를 모방한 것인데 혼례만은 유독 오랑캐의 풍속을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婚娶하는 집안의 服色과 珍羞는 다투어 사치하는 바 재산있는 자는 일시에 많은 돈을 쓰고, 貧子는 역시 그를 흉내내려다 이루지 못하여 아들 딸이 다 커도 때를 놓치게 됩

니다. 이리하여 和氣의 傷함이 이에서 유래합니다. 또한 豎들이 婬를 얻는 것은 천지간이 變事입니다... 중국의 제도를 따르면 혼인의 예는 바로 되고 음양이 순조로와 집니다.”라는 내용이다¹⁵⁾.

또 中宗 三十五年 八月 三公에 교지를 전하여 이르기를 “혼인때 사치의 풍습에 있어서 사대부들은 모두 궁중을 본받는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 이는 너무 심한 말이다. 나는 사치한 풍습을 변화시키고자 하여 궁중의 사치풍습을 없애왔다...

혼인의 일은 위로부터는 비록 橫看에 의한다해도 夫人 駙馬의 집안에서는 아직도 禁制가 이루어지지 않아 變是 폐가 많다. 大抵 풍속을 移易하는 것은 위에 있는 者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안으로는 궁중으로부터 금하고 밖으로는 公卿 大夫에 이르기까지 검소하여 舊習을 크게 變케한 즉, 士庶人은 스스로 본받을 것이다. 外間의 혼인은 사치를 극하여 혼인은 예를 잃고各司의 관원이 모두 노비들을 侵虐하고, 酒食에 돈을 많이 쓰는 까닭에 물건들에 대해 논할 때 비록 立法하여 금지하려 해도 범하는 자들을 적발하지 못하니 司의 堂上提調가 어찌 그들의 일을 듣지 못했겠는가. 이와같은 관원들을 일일이 엄하게 다스려 可히 弊風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니, 이는 下官 뿐만 아니라 司의 堂上提調가 역시 일에 열심하지 않은 所致이니 같이 罷職시킴이 당연하다.”¹⁶⁾ 하였고, 中宗 三十六年 三月에 정원에 전교하기를, “오늘 經筵에서 왕자의 第宅이 크다는 것과 혼인에 있어서 사치한 것과 인납 등의 일을 모두 말하였다. 이 뒤로는 이와 같은 일을 못하게 하라는 것을 該曹에 아울러 이르라.”¹⁷⁾ 하였다.

中宗 三十六年 二月에 이르기를, “혼인 때에 사치하는 일은 임금과 제상들이 먼저 범하고 있으니, 이 폐단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 또한 어려운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왕실과 혼인하는 집들이 먼저 스스로 단속하고 억제하여 上下가 한 마음으로 해 간다면 그런 풍습이 노력하지 않아도 고쳐지게 될 것이다.”¹⁸⁾ 라고 하였다.

13) 사회과학원민족고전연구소, 「李朝實錄」成宗 13年 2月, (서울: 여강출판사, 1991), pp. 58-59.

14) 上揭書, 燕山君 8年 6月, pp. 395-396.

15) 上揭書, 中宗 5年 12月, pp. 398-399.

16) 上揭書, 中宗 35年 8月, p. 393.

17) 上揭書, 中宗 36年 3月, p. 391.

18) 上揭書, 中宗 36年 2月, p. 240.

同年同月에는 혼인사치를 금단하는 규정을 정하였는데,

- [大典]의 禮典 婚姻條에 ‘혼인날 밤의 횃불을 2품 이상은 10자루, 3품 이하는 6자루로 한다.’고 하였고, 그 주에 ‘여자 편 의 집에서 같이 한다.’ 하였으며, ‘신부가 시부모를 뵈 적에 술은 1盞, 안주는 5그릇, 따라가는 여자종은 3인, 남자종은 10인으로 한다.’고 하였고, 그 주에 ‘당상관의 딸은 따라 가는 여자종 4인, 남자종 14인으로 한다.’ 하였습니다. 刑典의 禁制條에는 ‘당하관 이하로서 혼인 때에 紗羅綾緞과 鬪篋을 사용한 자는 杖 八十에 처한다.’고 하였다.
- [續錄]의 禮典 婚姻條에 ‘王子女의 吉禮 때 本家나 主婚家가 일체의 갖가지 일을 법제에 벗어나게 할 수 없고, 사치하는 것은 일체 금단한다.’ 하였다.
- 거행해야 될 受交와 刑典 禁制條에 ‘혼인 때 紗羅綾緞과 金銀珠玉과 珊瑚, 瑪瑙, 明珀과 같은 무릇 사치스런 물건은 당상관의 자녀를 막론하고 일체 금하되, 위반한 자는 그 가장을 제서유 위율로 논단한다.’고 하였다.
- [五禮儀]의 왕자녀의 혼인에 관한 내용 중에 ‘納彩와 納幣 때의 饌品은 3가지菓를 넘지 않는다. 중친과 문무관 1품 이하는, 納彩와 納幣 때의 饌品은 2가지菓를 넘지 않는다.’고 하였다.
- 혼인하는 짐들이 배양 아무 달, 아무 날, 아무의 집이 납채한다는 것과 아무 달, 아무 날 성혼한다는 것을 거주하는 部에 신고하고, 그 部에서 기일 전에 憲部에 牒報하여 서리를 내보내 嫡好하되, 만일 書吏가 嫡好할 수 없는 데라면 醫女를 내보내 嫡好하게 하고, 납채와 성혼날짜를 혹시 미리 신고하지 않았다가 뒤에 드러나게 될 직에는 혼인한 집안 뿐만 아니라 거주하는 部의 관원 및 관령을 아울러 推考하여 중한 죄로 논하게 해야 합니다.
- 무릇 혼인할 직에, 납채하고 성혼하고 하는 날에는 禁亂吏를 엄려하고 두려워하여 할 수 없이 법제대로 하고는 일체의 금단하는 물건을 혹은 미리 혹은 뒤에 비밀리 보내주는 폐단이 없지 않는데, 土族들 집의 은밀한 일이라 적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嫡好할 직에는 비록

적발하지 못했더라도 뒤에 발견된다면 추고하여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 혼인 날에는 둘러싼 손님들에게 잔치 대접을 하지 말고 臨時해서 둘러싸게 하되, 여기는 자는 한갓 주인 뿐만 아니라 잔치 술을 마신 손님들도 아울러 죄를 과해야 합니다.
 - 집이 가난하여 資粧을 해주지 못하는 사람은 할 수 없으나, 빈궁하지도 않은데 혼인할 시기를 놓친 자에 대해서는 각자가 거주하고 있는 部의 관령으로 하여금 그 집의 가장을 신고하게 하여 律에 의해 죄를 주되, 여기는 자는 그 部의 관원 및 관령도 아울러 추고하여 죄를 과해야 합니다.
 - 왕자녀의 길례 때에 本家 및 王婚家와 중친들이 법제에 벗어나는 짓을 하는 일들은 宗簿寺로 하여금 준례에 의해 금단하게 하고, 또한 헌부에서도 듣는 대로 규찰하게 해야 합니다.
 - 大君, 諸君, 公主, 翁主의 가례 때 服飾, 衾褥, 器皿, 織物, 饌品 등을 한결같이 [五禮儀]대로 하도록 하되, 紗羅綾緞과 金銀珠玉을 사용하여 사치스럽게 하기를 숭상하는 자에 있어서는, 담당 내관 및 主婚人의 부인과 부마의 가장 등을 중죄로 논하게 해야 합니다.
 - 大君, 諸君, 公主, 翁主의 가례 적에 왔다갔다 하는 使价들에게 紗羅綾緞과 絹, 明紬 등을 예물이라 하여 주는데, 폐단이 적지 않으니 일체 금단하고 주지 않아야 합니다. 만일에 한 번 그런 것을 두는 단서를 열어 놓는다면 그로부터 퍼지는 폐단을 막기 어렵게 될 것이니, 비록 綿布같은 미미한 것이라 하더라도 모두 일체 금해야 합니다.
- 사대부의 혼인 때에 乳父, 乳母, 問安奴婢, 親奴婢 등에게 주는 물건은 비록 소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일체 금단하게 합니다.
- [五禮儀]이 내용에 ‘大君, 諸君, 公主, 翁主와 부인의 의복은 모두 명주와 면포로 하고, 예식 때 부리는 양편의 노비와 하인들도 또한 명주를 사용한다.’ 했습니다. 상하가 차등이 없게 되고 사치가 매우 외람되게 되었으니, 노비 등의 의복은 다같이 면포로 바꾸게 하고, 사치스럽고 호사스럽게 된 모든 사항은 아울러 참작하여 재감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¹⁹⁾ 하

는 것이다.

위에서 보아온 것처럼 李太祖 이후 역대 왕들은 당시 직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혼인시의 국민의 사치, 낭비, 허례, 허식을 가능한 한 억제하고자, 갖은 수단방법을 다 썼다. 그러나 국민의 과분한 弊風은 그치지 않았다.

仁祖 二十五年 三月에는 諫院에서 啓를 올리기를 “나라의 紀綱이 解弛하여 奢侈가 習俗을 이루어 위로는 士夫로부터 밑으로는 庶人에 이르기까지 婚姻時의 飲食 衣服은 서로 奢侈를 숭상하니 新婦가 舅姑를 뵙는 禮에 있어서는 스스로 定食이 있으나 饌品 器數는 풍성하고 가득차니 그 費用은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청컨대 法官에 命해 一切 禁하게 하십시오. 만약 前의 풍습에 따르는 者, 있다면 적발하여 治罪합시다.” 하니 王이 “이에 따르라.”²⁰⁾ 하였다. 結局 啓를 올리면 의례히 암금은 이에 따르라고 命하지만 地 효과는 없어 百姓들의 폐습은 계속되지만 하였다. 그 原因은 當時의 司直當局의 統治力이 미약했고 無能力했던 탓으로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朝鮮時代 백성들의 사치와 낭비의 弊習은 끊임없이 이어져 흘러왔고 識者나 司直當局은 이를 금하고, 혹은 억제하려 했지만 통치력 부족, 지배계급의 腐敗와 무능 등 제반 조건으로 인하여 임금의 命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었던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물론 지배계급의 무능에 못지 않게 피지배계급의 허영과 몰지각 때문에 혼인사치의 금제는 有名無實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2. 織物의 禁制

朝鮮時代의 織物은 계급에 따른 엄격한 服飾禁制로 高級衣料의 생산을 억압하여 오히려 織物의 발달을 阻害하였다. 더욱이 中國의 明清으로부터 高級織物의 流入은 이러한 현상에 더욱 영향을 미쳐 朝鮮時代의 織物은 高麗時代의 織物 계승에 불과하였다.

朝鮮時代의 혼인사치의 금제를 고찰함에 있어

서 紗羅綾緞의 禁制는 뉘 수 없는 것이다. 직물은 복식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奢侈의 거의를 좌우하는 것이 이 紗羅綾緞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직물의 사치금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世宗 五年 正月에 禮曹에서 狀啓를 올리기를 “여자를 시집보내는 집안의 이불, 요, 옷장식 등이 모두 異方에서 생산되어 본국에서는 그 뒤를 댈 수 없는 물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물건을 갖추지 못하는데 구에 맡아 때를 놓치는 사람들이 파다합니다. 이제부터는 이불과 요 등에는 무늬 비단을 쓰는 것을 禁하십시오. 新婦의 복식도 또한 오로지 비단을 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집안의 貧富를 헤아려 우리 나라에서 나는 굵은 명주, 모시, 綿布를 당연히 사용해야 합니다.” 하니 王은 이대로 따르라고 지시했다²¹⁾.

또, 世宗 九年 十一月에 사간원, 무사간, 김효정 등이 상소하기를 “혼인에 시기를 잃음은 작은 일이 아니는데, 지금 혼인하는 연한을 정하여 시기를 어기는 한탄이 없게 하였으며, 또 혼인할 때綾緞을 쓰지 말고 모두 명주와 무명을 쓰도록 勅典에 실려있으나, 풍속이 헛치레를 숭상하여 본국 산물을 쓰기를 부끄러워하므로 혼인의 시기를 잃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有司가 비록 금하려고 하나 어찌 闕門 안까지 다 살필 수 있겠습니까. 원하옵건대, 앞으로는 권내의 복식 외에 신하들의 의복은 金銀의 例와 같이 일질 못쓰게 하여 감소한 풍속을 일으키옵소서.

이렇게 하면 혼인하는 집이 별다른 물건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여 저질로 시기를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²²⁾ 하였다.

成宗 三年 一月에 續六典의 혼인 조목에 “衿褥은 모두 綿紬 綿布를 쓰고 綾綿 段子是 쓸 수가 없다. 신부의 衣飾은 집에 있고 없는 것에 알맞게 하고, 반드시 紗羅綾段을 쓰지 않도록 한다. 昏夕의 拜席은 鬮篋을 베꿀 수 없으며, 단지 單席만을 베꿀다²³⁾.

明宗 八年 八月 사간원에서 올린 啓를 보면,

19) 上揭書, 中宗 36年 12月, pp. 259-265.

20) 前揭書, 「仁祖實錄」仁祖 25年 3月, p. 23.

21)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세종장헌대왕실록」世宗 5年 1月 (서울: 광명사, 1969), p. 209.

22) 上揭書, 世宗 9年 11月, p. 92.

23) 上揭書, 成宗 3年 1月, p. 56.

“... 법을 세워 지키지 않으면, 법을 세우지 않고 고치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婚喪의 사치를 금하는 것은 申明하는 법이 하나 둘이 아니었지만, 法을 우습게 보는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혼인하는 집안은 華奢를 극하기를 힘써 納彩, 玄纁은 부귀한 집안들은 모두 사라능단을 사용하고, 그 수가 적어도 十匹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舅姑를 뵈을 때의 酒果의 수도 그 법이 있으나 많이 가져 가려 하므로, 그 弊는 드디어 女家가 제때에 이르지 못하고 급기야 혼례를 그만둡니다. ... 이와 같이 심한 것이 또 없습니다. 청컨대 法司에 命해 나누어 규찰하도록 하십시오.” 라고 하니, 왕이 답해 말하기를 “혼인 華奢의 규찰은 뜰에 따르라...”²⁴⁾ 했다.

또, 中宗十一年一月에 사헌부에서 啓올리기를 “紗羅綾緞은 이미 금령을 내렸으니, 이는 法司에서 당연히 금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혼인은 반드시 밤에 하니 비록 禁亂하러 나가도 지적해낼 수가 없고 사대부들이 각자 그 집안에서 금하고 억제케하면 자연히 풍속이 될 것입니다” 하니 왕이 교지를 전하여 이르길 “혼인시 紗羅綾緞을 쓰지 못한다는 것은 教旨를 만들어 금지할 것이다”²⁵⁾라고 하였다.

이상에서 본 것 같이 이렇듯 혼인사치의 근원을 찾으면 紗羅綾緞으로 귀착될 것이다. 이 紗羅綾緞은 織物中 가장 高級의 位置하고 있으며 이것은 土産物이 아니고 唐物로서 거의가 밀무역해 들여오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紗羅綾緞의 禁制는 주로 서울에서 일어난 것이고 특히 宮巾이나 公主의 婚禮, 吉禮가 民間에 영향을 준 것이다. 그리하여 閭巷間에서는 이것을 마련 못하면 혼인까지 치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綱常에도 관련되었던 것이다. 歷代王이 이 금제를 내리지 않았던 때는 거의 없었으나 유명무실하여 잘 이행되지 않았던 것을 금제의 실재를 보아서 알 수 있다.

3. 服飾 및 裝身具의 禁制

太祖가 집권 후 얼마 안되어 太祖三年六月에 의복 혼인 사치 禁制가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이 禁制 속에서 혼인사치를 규제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太祖三年六月에 都評議使司에서 禮曹가 자세히 정한 狀啓를 준비하여 말하기를,

“입금계 올리고 儀式에 쓰는 외에 신하는 金을 쓰지 못하게 한다. 兩部 外에 紗羅綾緞 玉纒子 環子를 사용치 못한다. 嘉善以下 六品以上은 酒器 이외에는 銀을 사용치 못한다. 七品以下는 酒器도 역시 銀을 사용치 못한다. 品帶 및 臺省員(司憲府, 司諫院의 宮史)의 頂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庶人과 工商과 賤隸는 비록 관직이 있다 해도 金, 銀, 斜皮를 사용치 못한다. 혼인에 있어서도 역시 職의 品階를 따르며 합부로 사용치 못한다.” 하니 王이 이에 따르라 하였다²⁶⁾.

燕山君 6년에는 채단과 寢具에 紗羅綾緞을 쓰는 사람과 갖의 장식에 金銀珠玉을 쓰는 사람과 갖끈에 珊瑚·유리·明珀을 사용하는 사람과 同牢宴 외에도 油密菓를 사용하는 사람과 참람하게 안장을 꾸민 말을 먼저 보내는 사람과 신부가 시부모를 뵈 때, 紗羅綾緞 의복과 金銀珠玉 佩物을 갖추어 주는 사람은, 당상관의 자녀를 낳을 것 없이 일체 모두 금단시키되, 어긴 사람은 그 가장에게 제서를 어긴 형률로써 논단하도록 하소서²⁷⁾ 하였다.

明宗六年九月에 헌부가 아뢰기를,

“흉년이 해마다 더 심해지는데, 백성들의 사치는 갈수록 더해가고 있으며, 혼인의 폐단도 더 심하여 납채하는 물품이 적은 자는 5~6필이고, 많은 자는 10여 필이나 되며, 혼례하고 잔치할 때는 반드시 金線을 두른 저고리와 구슬 달린 치마를 입는 등 다투어 사치스럽게 합니다. 신부뿐만 아니라 모든 하객들도 다 그러합니다. 해조로 하여금 옛 條目을 申明하게 해서 일체 개혁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²⁸⁾.

英祖 四十五年에 하교하기를,

“사치를 금할 것을 申飭하는 것은 진실로 옳다. 油密菓의 예에 의하여 무릇 혼인 때에 唐物을

24) 上揭書, 明宗 8年 8月, p. 170.

25) 上揭書, 中宗, 11年 1月, p. 260.

26) 上揭書, 「李朝實錄」太祖 3年 6月, p. 340.

27) 上揭書, 燕山君 8年 6月, pp. 395-396.

28) 上揭書, 明宗 6年 9月, p. 194.

금하였는데, 綾廣織에 이르러서도 내가 항상 깊이 싫어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冠帶와 戒服은 본래부터 雲紋이 있었으며 부인의 圓衫은 常織이 있었는데, 어찌 특히 綾廣織을 燕市에서 구차히 구하겠는가? 이로써 신칙하여 나의 暮年에 더욱 스스로 신칙하는 뜻을 보일 것이며, 이뒤에 국혼 때에 궁중의 中官과 內人으로서 모시는 자는 모두 변포를 쓰고 紬緞을 금하며 중관과 나인이 命을 어기는 경우는 모두 중하게 다스릴 일을 일체 범을 정하여 사행하라” 하였다²⁹⁾.

또 “신부가 靑, 紅, 金線衣를 입으면 首母도 같이 벌을 준다. 大君, 諸君, 公主, 翁主의 嘉禮時의 服飾, 衾褥, 器皿, 幣物, 饌品은 모두 五禮儀에 따른다. 위에 反할 때에는 主婚人, 夫人, 駙馬家長을 중히 논한다. 혹 金銀器皿을 사용하거나 혹은 왕래인에게 물건을 줄 때, 紗羅綾緞, 絹, 絹, 綿紬를 사용하거나 혹은 同牢日의 宴會外에 油密果를 사용하면 主婚人 家長을 범을 금한 것으로 보고 죄를 논한다.”³⁰⁾ 라고 당시의 일을 입증해 주고 있다.

中宗 35年 6月 三公에게 전교하기를,

“婚姻에 사치하는 풍습이 物議가 될 때마다, 사대부들은 모두들 ‘宮中을 본 뜬 것이다.’라고 한다 하니, 이 말이 매우 옳다. 옛날의 제왕들이 숭선하여 궁중에서 검소하게 생활한 것은 사대부들로 하여금 본받게 하려고 해서였다. 나도 이런 사치하는 풍습을 바꾸고자 하여 궁중의 의복과 음식에 별로 사치하는 풍습이 없고 진한 초록색 물을 들인 옷도 이미 궁중과 尙衣院에 금지시켰는데, 듣자나 外間에서는 아직도 그 버릇을 버리지 못하여 金線草鞋를 보통 짚신처럼 여겨서, 궁중에서는 신지않는데 外間의 娼妓의 무리들이 다투어 이를 신는다 하니, 이는 반드시 廢朝에서 유래된 풍습이다. 혼인의 일은 위에서 비록 열핏 보더라도 夫人과 駙馬의 집은 금지하더라도 또한 그치지 않아서 폐단이 많다. ... 이제 外間에서 婚禮를 아주 사치스럽게 하므로 해서 이를 준비하느라고 혼인의 때를 놓치고, ... 흥년이 들어 물건

이 귀할 때면 백성들의 고생을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³¹⁾ 하였다.

中宗 三十六年 二月에는 신부가 시부모를 별격에 靑紅金線衫을 입는 것을 세속에서 숭상하기 때문에 가난한 가정에서는 쉽사리 마련하지 못하여 분주하게 구득하느라 폐단이 또한 적지 않습니다. 앞으로 가정의 형편에 맞추어 입게 하고 靑紅金線衫은 일체 금단하되, 만약에 금법을 범하면 혼가의 죄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首母도 아울러 추고하여 죄를 과한다고 하였다³²⁾.

憲府에서 의논하기를,

“근래에 閭巷이 奢侈가 극도에 이르러 婚禮에는 반드시 寢帳을 사용되되 어떤 사람은 錦繡를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儷皮를 사용하는 것은 古禮인데 지금은 회복할 수 없고 玄纁 2段을 사용한 나라의 풍속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오직 저 여염의 부자는 金銀·珠貝·紗綾의 부치가 반드시 函에 가득찬 뒤에 그만두며, 비록 이보다 아래 드는 자라도 紬綿을 사용하는 등, 흉내내어 많은 것을 자랑하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은 이것을 장만할 힘이 없어 인륜대사인 혼기를 놓치게 되고 혹은 죽을 때까지 장가를 들지 못하는 자도 있습니다. 청컨대 지금부터는 婚禮에 用帳과 齋幣가 둘이상의 수가 넘는 자는 禁條에 添錄하여 일체 禁斷하소서” 하다³³⁾.

이에 있어 尹宣學의 「魯西日記」에서 보면, 內房에는 男子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女子로써 그 取締를 담당하게 하는 가운데 醫女로써 이를 探索케 한 바 있었으니, “李宣學이 俞武仲에게 주는 글 가운데, 婦人은 夫의 服을 좇는 바 우리나라 堂上官 이하의 綿을 입는 것을 不許하거나 그 婦人 역시 이와 같이 한다고 하면 즉 奢侈의 풍습은 스스로 그칠 것이다. 崇儉의 본은 宮中에서부터 시작된다 할지라도 奢侈의 命은 역사 제정하여야 한다. 이것은 古人에게 물어보니 婚姻의 大禮라 할지라도 禁亂의 醫女가 있어서 와서 罔罔하였다. 故로 반드시 綿布로 紅長을 만들어 禁女에 보이고 賂物을 주어 보낸 뒤에 同牢宴

29) 增補文獻備考, 卷 131, 15 右, 前掲書, 李順洪, p. 413에서 재인용.

30) 大典後續錄, 卷 3, 禮典, 禁制, 上掲書, p. 414에서 재인용.

31) 前掲書, 「李朝實錄」중종 35년 6월, p. 395.

32) 上掲書, 中宗 36年 2月, p. 262.

33) 上掲書, 肅宗 41年 9月, p. 120.

을 베풀고 錦衣를 입었다.”³⁴⁾한 것으로 보아서도 사치를 알 수 있는 바, 그러나 금제 效果는 별로 없었던 것 같다.

增補文獻備考를 보면,

“常民 남자로서 娶妻할 때, 紗帽冠帶를 입을 것을 禁한다.”라고 쓰여졌다.

英祖 三十三年 十月과 十二月에 髻髻禁止令이 논의된 것을 살펴보면 十月에 “上이 酒禁에 언급하고는 이에서 今曰 禁해야 할 것은 婦人의 髻髻(엷은머리)라고 하고하였다.”

경언지사 洪鳳漢은 “一般이 혼례할때는 다례를 사느라고 敗散할 지경에 이르는 사람이 적지 않다. 禁令이 한번 내리면 은 상인의 사람들이 반드시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국가적 계도를 一定한 年후에야 비로소 禁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³⁵⁾. 그리고 正祖때에는 族頭里에 장식한 것은 禁條에 있는 것인즉 혼례 때 소용되는 七寶 簇頭里에 세를 주거나 세를 내는 것을 禁한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혼인복식과 그의 부속 품들 또한 사치가 극에 달하여, 이를 준비하느라 혼인매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게 되어 이러한 弊端을 없애기 위해 금제가 자주 내리게 되었지만, 잘 시행되지 않았다.

IV. 禁制의 罰則

朝鮮時代에는 많은 禁制가 있었다. 그 禁制를 犯하였을 때 어떤 처벌을 하였는지 “經國大典”과 “大典會通”에 나타난 아래에 禁制에 대한 罰則을 고찰해 보려고 한다.

經國大典과 大典會通에는

一. 赴京하는 사람과 隣國에 使臣가는 사람으로서 定數以外の 物質을 가지고 가는 者

(1) 赴京使 - 布10匹

書狀官以下正官 - 各布 5匹

打角夫 - 各3匹 이고

人蔘은 使以下 - 各 10斤 이고

(2) 遼東에 가는 者 - 布各10匹이며 人蔘은 3斤이고

(3) 隣國에 使臣가는 者 - 布20匹

從事官 - 布10匹

從 人 - 布3匹이고 人蔘은 使以下가 各 10斤이고 布는 모두 10斤을 使用한다. 라고 있다. 또 大典會通에는

禁物(闊細布, 縵紋席, 厚紙, 貂皮, 土豹皮, 海獺皮 따위)를 兩國의 浦所와 客館에서 물래 파는 者도 禁止하고 犯한 者는 杖一百度, 徒3年 한다. 또 鐵物, 牛馬, 金銀 珠玉寶石, 焰硝, 軍器 따위를 물래 파는 者는 罪가 重한 者로 간주하여 絞한다. 라고 있으니 이는 太祖朝에 내린 禁止에 대한 罰則인 것으로 생각된다.

① 大小人員으로서 紅灰白色의 表衣 使用者 白笠 紅綵를 使用者

또 酒器以外에 金銀 靑蠶 白磁器를 使用하는 者.

庶人男女는 紅紫衣, 紫帶, 金, 銀, 靑蠶, 酒器, 交綺綉, 玉, 珊瑚, 瑪瑙, 明珀, 靑金石과 黃銅鞍飾, 銀鍍子, 斜皮를 禁止한다. (그러나 牛巾, 首帕, 轡紐 따위의 細瑣한 장식물은 禁止하지 않는다. 또 질게 물들인 灰色衣 兩貝이 白色衣 士族의 婦女, 兒童, 京妓의 雜食하는 金銀 珠玉과 正兵, 庶人의 白色衣는 禁치 아니한다.

② 寺射教以外에 眞彩를 使用하는 者

③ 花席을 使用하는 者

④ 朱漆器를 使用하는 者

⑤ 絲花鳳 金銀露布花를 使用하는 者

⑥ 官舍와 堂下官以下 婚姻하는 자로서 紗羅綾 緞縵綾을 使用하는 者(士族의 婦女, 兒童, 京妓는 禁止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경우 各者는 杖 60度로 한다. 이상은 衣服屬具 織物 婚姻奢侈에 대한 禁制의 罰則이다. 이러한 罰則도 오래된 風俗의 고질을 根絶하지는 못했고 계속 禁令이 반복된 것도 이미 각종 禁製에서 보았다.

또 大典會通에 위로는 宮禁에서 아래로는 어염에 이르기까지 章服과 戎服 이외에는 土産이 아니면 입지못하니 (그러나 禁軍, 扈衛, 軍官과 醫女, 沈船婢는 찬란한 의복을 禁하지 않는다.) 士族의 婦女로서 服着을 그의 夫의 爵品에 의하는

34) 유회경, 「韓國服飾史研究」(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0), p. 583.

35) 前掲書, 「李朝實錄」英祖 33년 11월, p. 408.

이외에 大緞, 錦緞, 鳳銷, 金玉銷, 珠細, 假髮를 착용하는 者(新婦는 제외), 紗綾紬를 물론하고 대개 有紋으로 된 것은 一切 嚴禁하되 犯하는 者는 市民과 아울러 一律로 施行하고 譯官, 商賈는 濟府에서 먼저 梟示하고 나중에 狀聞하며 物件은 柵間外에 불질러 버린다.

또 堂下官으로서 馬鞍에 銀入絲를 사용하는 者는 모두 嚴禁하여 罪를 처단한다. 하였으니 이는 土産物이 아닌 고급직물의 禁과 金銀珠玉, 假髮에 대한 禁을 犯한 者의 罰則이다.

이상의 罰則이 기반이 되어 朝鮮末까지 여기에 의거하여 罪를 논했으며, 때에 따라서는 婦女가 犯한것에 대하여 家長을 論罪하거나 成宗朝에 한 실례를 보면 紗羅綾緞과 貂皮, 鼠皮를 국경에서 교환하는 者는 官吏인 경우 罷職도 했었다. 대개의 경우 大典에 의거한 罰을 論했었다.

이러한 罰則도 오래된 風俗의 高絶을 根絶하지는 못했고 계속 禁令이 반복된 것도 이미 여러 가지 禁制에서 보았다.

V. 結 論

朝鮮時代 전반에 걸친 婚姻奢侈에 관한 禁令을 살펴 보았다.

朝鮮時代의 服飾은 慕萃事大主義가 中國 明의 制度를 따르기에 급급하였으며 혼잡성을 지녔던 고려제도도 이어 받아 그야말로 服飾의 粉華상태를 이루었다. 요컨대 어느 시대보다도 儀觀念이 엄격했던 朝鮮冠服制度는 정치적 변천에 따라 服飾에 대한 禁令도 자주 있었으며, 이에는 身分階級の 확립과 奢侈의 禁, 外國産費用을 防止하는 등 여러 가지 意味가 내포되어 있었던 것이다.

禁制는 有限한 朝鮮의 富를 가지고 朝鮮貴族의 階級的 儀章을 차리기 위한 것이고 이것을 본받으려는 士大夫나 商人들이 使臣交易을 통하여 密輸해온 奢侈品을 사용하는 것을 禁止한데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무한한 奢侈心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이 法網을 뚫고 奢侈品이 흘러 들어와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것이다. 따라서 많은 禁制가 거듭 거듭 취해졌었다.

婚姻奢侈에 대하여는 富家와 大族들이 허영과 화려함을 서로 자랑하여 婚需와 侈장을 사치롭게

하여 가난한 사람들도 서로 따르려고 하다가 힘이 감당하지 못하면 마침내 혼인할 시기를 놓치게 되는 예가 많을 정도로 혼인사치는 극에 달하였다. 또 혼인사치는 紗羅綾緞와 관계가 깊어 織物의 禁과 마찬가지로 太祖王부터 계속 論議되었으며 서로 뚫 수 없는 것이었다.

朝鮮王朝時代의 금제 중에서 紗羅綾緞의 禁制는 다른 사항보다 빈번하게 내려졌던 사항이다.

혼인사치의 대표적 품목인 紗羅綾緞이나 金銀珠玉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은 奢侈物로 中國에서부터 들여와야 했으므로 이것을 장만하지 못하여 婚姻을 못하고 人倫을 폐하는 경우까지 생겼으므로 그 폐단을 없애기 위한 婚姻奢侈 禁制가 내려지게 되었다.

太祖때 의복혼인 사치금제가 처음으로 실시되었는데 임금께 올리는 儀式에 쓰는 외에 金을 쓰지 못하게 하였고, 兩部外에 紗羅綾緞 玉櫻子를 사용치 못하였다.

燕山君 때에는 사라능단 의복과 폐물을 禁斷시켰으며, 갓장식에 金銀珠玉을 쓰는 것과 갓끈에 珊瑚, 유리, 明珀을 금지시켰다. 明宗 때에는 婚禮時 金線을 두른 저고리와 구슬달린 치마를 입어 奢侈하였으며, 英祖때에는 新婦가 靑, 紅, 金線衣를 입는 것을 금하기도 하였다.

또, 중종때에는 혼인사치를 금단하는 여러 가지 규정을 세우기도 하였다.

婚姻奢侈 禁令에는 帶銀, 紗羅綾緞, 油蜜果, 宴飲, 饌品, 佩物 등이 禁制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러한 禁制에 대하여 罰則도 있었는데 주로 織布, 銀, 人蓼, 杖, 徒, 絞, 流, 등의 종류로서 罪의 輕重에 따라 각각 罰이 달랐다.

이상에서 보아온 것처럼 李太祖의 역대 왕들은 당시 직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혼인사의 국민의 사치, 낭비, 허례, 허식을 가능한 한 억제하고자, 갖은 수단방법을 다 썼으나 국민의 과분한 弊風은 그치지 않게 되었다. 이렇듯 역대왕이 금제를 내리지 않았던 때는 거의 없었으나 잘 이행되지는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은 조선실록에서 혼인사치에 대한 금제만을 살펴본 것으로, 사치의 폐단을 치유하려고 하는 금제는 혼인사치에 대한 금제이외에 많은 금제가 있음을 밝혀두고, 오늘날 같이 호화혼수

로 인해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시점에서 금제에 대한 고찰을 살펴보는 것은 의의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參考文獻

- 李能和, 朝鮮女俗考.
 朝鮮王朝實錄.
 增補文獻備考.
 高光林, “朝鮮時代に 있어서의 女子禮服에 關한 研究(Ⅰ).” 「仁川教育大學論文集」第 11 輯, 1986.
 高福男, 「韓國傳統服飾史研究」, 서울 : 一朝閣, 1986.
 金寬峯編著, 「冠婚喪祭」, 서울 : 泰西出版社, 1980.
 金東旭, 「韓國服飾史研究」, 서울 : 亞細出版社, 1980.
 金靜子, 「韓國結婚風俗史」, 서울 : 民俗苑, 1981.
 金種鳴, 「韓國의 婚俗研究」, 서울 : 大星文化史, 1981.
 金宗澤, “傳統婚俗에서의 納徵禮에 대하여,” 「晚星女子大學校附設, 韓國女性 問題研究集」第十一集, 1982.
 金情姬, “朝鮮時代 女子服飾에 나타난 紋樣에 대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誠信女子大學校 產業大學院, 1982.
 民族文化研究所, 「韓國民俗大觀 Ⅰ」, 서울 : 高大民族文化研究所 出版部, 1980.
 민족문화추진회, 「宣祖實錄」, 서울 : 민족문화추진회, 1989.
 朴京子, 「韓國服飾論攷」, 서울 : 新丘出版社, 1983.
 朴聖實, “翟衣制度의 變遷 研究.” 「服飾」第 9號, 1985.
 사회과학원 민족고전연구소, 「李朝實錄」, 서울 : 예강출판사, 1991.
 「四禮便覽 신 구 冠婚喪祭禮大典」, 서울 : 明文堂, 1987.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세종장헌 대왕실록」, 서울 : 광명사, 1969.
 李祖玉譯著, 「禮記」, 서울 : 明文堂, 1985.
 李善宰, “朝鮮時代 服飾禁制의 動因과 樣相에 관한 研究.” 「淑明女子大學校 研究委員會 論文集」제 30호, 1990.
 李順洪, 「李朝時代의 服飾禁制」, 梨花女子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72.
 _____, 「李朝禮服에 관한 考察」, 詳明女子師範大學 論文集, 1972.
 _____, 「韓國傳統 婚姻考」, 서울 : 학연문화사, 1992.
 林喜淑, “朝鮮時代 織物에 나타난 紋樣 考察.” 碩士學位論文, 弘益大學校 大學院, 1985.